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6. . .
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축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규모의 과도한 확대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고자 문구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별표 28 제2호 다목의 문구 수정
 - 당 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
 - 변 경: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8 제2호 다목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 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로 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제22조제4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5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부지경계 간 100m 이내)의 가구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 가장 가까운 가구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나.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아니할 것
 - 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마.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은 나목을 따른다.)
 - 사. 도로 및 철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아. 관광지,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표시사항 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표시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 및 영업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비 고

1. ‘가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2. ‘도로’는 「도로법」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3.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를 말한다.

5.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6.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을 말한다.